

회비 규정

제정 2000. 2. 18

개정 2000. 1. 15

2016. 10. 20 전문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 따른 회비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협회는 회비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회비의 종류)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회비

가. 입 회 비 : 회원으로 입회하는 때에 납부하는 회비

나. 연 회 비 :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 회비

다. 통상회비 :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금액의 1,000분의 1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회비

2. 특별회비 : 찬조금, 기부금등

3. 분 담 금 : 회원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

제4조(회비의 부과) ① 일반회비는 별표 1의 회비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한다.

② 일반회비 중 연회비는 매년 1/4분기 중에 부과하며, 통상회비는 매년 2/4분기 중에 부과한다.

③ 특별회비 및 분담금은 필요한 때에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별도로 부과한다.

제5조(회비의 감면) ① 일반회원으로 입회하는 때의 연회비는 가입일자 해당 월 기준 월할계산 하고 입회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특별회원에게는 통상회비를 면제하되,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회비의 감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에 따른다.

제6조(회비의 납부) 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.

1. 입회비는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한 때에 납부한다.
2. 연회비와 통상회비는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.
3. 특별회비 및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.

제7조(회비의 반환) 회원은 정관 및 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8조(회비부과방법) ①회비의 부과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비대장) 회비업무 담당자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부과 및 납부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회비부과기준

1. 일반회원 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입 회 비 : 입회하는 때의 연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.

2) 연 회 비

○ 일반회원 중 시공업체인 회원

- 시공능력평가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: 1,000만원
-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경우 : 600만원
- 시공능력평가액이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: 500만원
-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: 400만원
-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: 300만원

○ 일반회원 중 시공업체를 제외한 회원

- 매출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: 400만원
- 매출액이 7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인 경우 : 350만원
-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경우 : 300만원
-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: 250만원
-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: 200만원
-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: 150만원

3) 통상회비 : 연도별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금액의 1,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, 부과금액은 5,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2. 특별회원 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입 회 비 : 입회하는 때의 연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.

2) 연 회 비

- 법인 : 100만원
- 개인 : 5만원